

▶ 교육일자 : 2024. 08

▶ 작성자 : 박민규 책임매니저



1. ㈜넥스오토 윤리제보 안내 매뉴얼

- ▷ 협력업체 대상 부정 및 갑질
- 금품수수/접대, 사적요구, 지분투자, 부당지시, 폭언/폭행 등
- ▷ 직무 상 이해상충
- 부업, 과도한 사적 용무, 구성원 금전대차, 내부정보 이용 투자, 특수관계자 거래 등
- ▷ 사회적 가치 훼손
- 환경/안전/보건/품질 규정 미준수, 인권 침해, 사회적 약자무시, 고객정보 유출, 고객에 허위정보 제공
- ▷ 구성원 간 인격 존중 미흡
- 폭언, 폭행, 성희롱, 따돌림, 업무배제, 사적 용무 지시 등
- ▷ 부적절한 업무 처리
- 허위보고, 실적조작, 편법영업, 비용, 자산 부당사용, 정보유출 등
- ▷ 정보보안 위반 사항
- 회사 사내 중요 문서 OR 데이터의 승인되지 않는 외부 유출 및 지적자산에 대한 외부 유출 外



2. ㈜넥스오토 인권제보 안내 매뉴얼

- ▷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
-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,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
- ▷ 차별
- 국적, 출신지역, 인종, 성별, 연령, 문화, 종교, 장애, 학력,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는 경우
- ▷ 동등한 기회
-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운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,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 하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
- ▷ 직장 괴롭힘
-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, 성희롱, 따돌림,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·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



2. ㈜넥스오토 인권제보 안내 매뉴얼

- ▷ 안전 및 보건
-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, 직무상 사고 및 부상, 재난, 재해,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
- ▷ 일·가정 양립
-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행위



- ※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1)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
- 2)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는 경우
- 3)구체적인 행위 (대상.방법 등) 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
- 4)고객불만, 하자보수 등 서비스/품질 관련 사항
- 5)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
- 6)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

2. 처리절차

- 1. 등록
- 제보한 내용 등록
- 2. 접수검토 (접수 후 D +1 日 內)
 - 제보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부서 확인 등이 진행,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전담부서로 이관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회신.
- 3. 기초조사 (검토 완료 후 D + 3日 內)
 -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사에 착수합니다.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조사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, '제보처리결과' 메뉴를 통해 문의드릴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.
- 4. 본조사 (기초조사 완료 후 D + 3日 內)
 -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,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.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 드리며, 조사의 난이도 및 범위에 따라 기간이 변동 될 수 있으니 문의 주시면 별도 회신 드리겠습니다.
- 5. 종료 (조사 완료 후 D + 7日 內)
 -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 조사가 종료됩니다. 후속조치(인사조치, 제도상의 개선 등)가 포함되는 경우 조사 결과와 함께 회신 드립니다.



3. 제보자 보호제도

- 1)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- 2)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인권 및 윤리 경영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- 3)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.
- 4) 고충 처리 시 고충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며, 이러한 행위가 발견 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.
- 5)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.
- 6)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- 7) 고충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- 8)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1回/年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하며, 지속 보완하며 개정 합니다.



4. 교육

1) 임직원의 인권 및 윤리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, 내부 인권윤리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 윤리경영 교육을 진행한다. 인권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,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. 또한,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,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.





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listening!